#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(전재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55

발의연월일: 2022. 9. 22.

발 의 자:전재수·고영인·최인호

박재호 • 권칠승 • 이장섭

고용진 · 김정호 · 민홍철

김두관 · 전혜숙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

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 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·노동자·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 어졌으며,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.

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·19혁명과 5·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, 유신반대투쟁,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.

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 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,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・결정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나.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,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(안 제6조).
- 다.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, 사망한 때,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권리가 소멸함(안 제9조).
- 라.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, 대부, 양로지원,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(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).
- 마.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·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·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

있도록 함(안 제67조 및 제68조).

- 바.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1 조).
- 사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(안 제76조).

#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(禮遇)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예우의 기본 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·정의 ·인권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(이하 "민주유공자"라 한다)과 그 유족

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- 1.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받은 사람
- 2. 민주화운동부상자: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서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 조제5항 또는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"장해등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- 3. 민주화운동희생자: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수배·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및 공소기각·유죄판결·면소판결·해직 또는 학사징계(퇴학 및 정학에 한정한다)를 받은 사람(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으로서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·결정된 사람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### 1. 배우자

- 2. 자녀
- 3. 부모
-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-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 妹)
-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 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(養子)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 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.
-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.
-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- 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
- 3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
- 4. 「병역법」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- 5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된 사람
-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 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 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 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예우 원칙)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 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,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 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.
- 제7조(등록 및 결정) ①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국가 보훈처장은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또 는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(이하 "각 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"보훈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신상 변동의 신고 등)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사망한 경우
  - 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  - 3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4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- 5.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  - 6.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
- 7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
- 8. 성명 ·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
- 9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(身上) 변동이 있는 경우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, 등록결정의 취소,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, 신고인에게 그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)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  - ②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.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

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.

- ③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.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함께 소멸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 진 경우
- 2.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민주유공 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(欠缺)이 있어 민주유공자의 등 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
-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·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- 제10조(품위유지 의무)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2장 교육지원

- 제11조(교육지원)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(이하 "교육기관"이라 한다) 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 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.
- 제1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교육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
  - 2.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  -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  - 4.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인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
  -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(입학·재입학·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.
  -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"기준 중위소득"이라 한다)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

- 2.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- 제13조(교육기관)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,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. 다만,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.
 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. 다만,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.
  - 3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  - 4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
- 제14조(교육지원 신청)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(이하 "교육지원 희망자"라 한다)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 험정보"라 한다)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조사·질문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(제12조제3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소득·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

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조사·질문의 범위·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국가보훈처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・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

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

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7조(취학시킬 의무) ①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취학시켜야 한다.
  -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 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입학 절차)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, 입학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수업료 등의 면제 등)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,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(이하 "수업료등"이라 한다)를 면제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. 다만, 교육기관 중 대학,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의 경우

- 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 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.
-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 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.
-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(國庫補助)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 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(年限),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.
  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 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
  - 2.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・운영

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

-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다음 다음 각 호와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, 그 지급기준·지급액, 지원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
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제21조(학습보조비의 지급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
  - 2.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
  -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취업지원

제22조(취업지원)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

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.

- 제23조(취업지원 대상자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
  - 2.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
  -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  - 4.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  - 5.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 정된 사람의 자녀
  - ②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 한다.
  -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제24조(취업지원 실시기관)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립학교와 공립학교
  - 2.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또는 공·사단체(公·私團體)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.

- 3. 사립학교
- 제25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(加點)하여야 한다.
  - 1.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   - 가.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나.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2.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
    - 가.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나.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  -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(換算)할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
- 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 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·직급 및 직위,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취업지원의 신청) 취업지원(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 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) ①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 반군무원(이하 "일반직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(이하 "채용비율"이라 한다)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

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, 추천기준, 특별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)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·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·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·점검 결과 시정(是正)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

-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) ① 제2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하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.
 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
 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  - 3. 그 밖에 제2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
  - ③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

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.

- 제30조(업체등의 신고) ① 제2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(이하 "업체등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, 고용직종, 고용인원, 고용기준,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31조(보훈특별고용)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
  - 2.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
  - 3.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

- 4.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1.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: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
- 2.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(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 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):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
- 3.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: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
-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2조(취업지원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제31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
  - 3. 근무태만·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 된 경우
- 제33조(신체검사의 합격기준) 취업지원 대상자인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,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 다.
- 제34조(경력기간의 합산) 업체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 복무 경력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(號俸劃定)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(合 算)할 수 있다.
- 제35조(차별대우 금지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 (신규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

- ·보직(補職)·승진·승급(昇級)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- 제36조(취업사실 등의 통보)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
  - 2.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
- 제37조(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) 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,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.
  - ② 제25조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5조·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고용(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.

-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5조, 제27조,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 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38조(직업훈련)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10조에 따른 우선 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제39조(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·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의료지원

- 제40조(의료지원)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.
- 제41조(진료) ①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(傷痍處)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 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 다만,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 - ④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「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

- 1. 민주화운동희생자
- 2. 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
- 3.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 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의 지원 방법·절차·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- 제42조(보철구 지급)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(補綴 具)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43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 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보 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4조(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)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·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대부

- 제45조(대부)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(長期低理)로 대부(貸付)를 할 수 있다.
- 제46조(대부 대상자)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민주유공자
  - 2.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.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47조(대부의 재원) 국가는 제45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「보훈기금 법」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- 제48조(대부의 종류)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농토구입대부

- 2. 주택대부(주택구입대부, 대지구입대부, 주택신축대부, 주택개량대부,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- 3. 사업대부
- 4. 생활안정대부
- 제49조(대부의 한도액)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 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8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.
  - 1. 농토구입대부: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
  - 2. 주택구입대부,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: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
  - 3. 주택개량대부: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
  - 4. 주택임차대부: 임차금액 이내
- 제50조(대부금의 이율) 대부금의 이율(利率)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1조(대부의 신청 등)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,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.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.

- 제52조(대부금의 상환기간)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(分割償還)하여야 한다.
  - 1. 농토구입대부: 3년 거치(据置) 후 12년
  - 2. 주택대부: 20년
  - 3. 사업대부: 15년
  - 4. 생활안정대부: 5년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- 제53조(주택의 분양 등)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7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·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의 수급(需給)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.
- 제54조(보조금 지급)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(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)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55조(담보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(주택 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을

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(買受)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 증을 할 수 있다.

-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사람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주택개량대부·주택임차대부·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(債權保全)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⑥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

- 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(收用)된 경우(부분수용으로 채권보 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2. 담보재산이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되하게 된 경우
- 3.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 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
- ① 주택개량대부, 주택임차대부,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.
- ⑧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(抵當權)의 말소 (抹消)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56조(채무의 인수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(競落人)이 제4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(競落代

- 金)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.
- 제57조(담보재산의 매수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 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「민사집행 법」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민사 집행법」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·처분할수 있다.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대부의 승계)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(承繼)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그 밖의 지원

제59조(양로지원)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 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(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제60조(요양지원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,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1. 민주유공자
- 2. 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3.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
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,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,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1조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 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다.
- 제62조(양육지원) 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·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·대학 또는 이에준하는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.
- 제63조(양로지원 등의 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·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제64조(수송시설의 이용 지원) ① 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(輸送施設)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 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6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- 제66조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와 그유족 중 제4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·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,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  - ② 「주택법」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·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·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

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급의 신청절차,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67조(기념·추모 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 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·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,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·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 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68조(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자연공원 법」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구역 내 또는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 묘지 경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·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·건립할 수 있다.
  -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·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7장 보칙

제69조(학습보조비 등의 환수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

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(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),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·직업능력개발훈련비,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·지원비, 제4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, 제5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0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
- 2.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
- 3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 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 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(缺損處分)할 수 있다.
- 제70조(반환의무의 면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

- 제71조(예우의 정지)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- 제7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  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. 다만,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・결정된 사람이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 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

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- 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 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·제338조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
  - 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  - 다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죄
  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 - 마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, 제11조

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

- 4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5.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의 유 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. 다만,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
-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 이 경과한 경우
-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주

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0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73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외국민등록사 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.
  - 1. 제7조에 따른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
  - 2. 제8조에 따른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
  - 3.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
  - 4.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
  - 5.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

- 6. 제51조제2항에 따른 대부
- 7. 제5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
- 8. 제58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
- 9. 제60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
- 10. 제66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
- 11. 제69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
- 12. 제71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
- 13.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
-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·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4조(민주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) ① 누구든지 민주유공 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-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5조(위임 및 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제8장 벌칙

- 제7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
  - 2. 제16조제6항(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
- 3.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·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

-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③ 제7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77조(과태료) ① 제31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  - 2.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  - 3. 제74조제2항을 위반한 자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